

	<h2 style="margin: 0;">학 칙</h2>	표준번호	학칙 2-1-1
		제정일자	1979. 2.28
		개정일자	2021. 4.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수성대학교 (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학사운영, 평생교육, 부속·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

제2조(교육목표)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인성과 실무를 겸비한 헬스·라이프·소셜케어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를 교육목표로 한다.(개정 2011.9.29, 2014.1.6., 2015.12.3., 2019.4.18.)

1. 휴먼케어(HC)인성 교육 실현
2. 창의융합 교육 실현
3. 현장실무 능력 함양
4. 평생직업 교육 실현

제3조(명칭) 본 대학은 수성대학교라 한다.(개정 2012.5.1)

제4조(위치) 본 대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만촌동)에 둔다.(개정 2008.1.14)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의 설치 학과의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8.1.14, 2008.9.11. 2010.9.27, 2011.9.29, 2012.6.22, 2012.9.18, 2013.6.7, 2014.8.11., 2015.7.21., 2015.12.3., 2016.7.8., 2017.4.6., 2018.1.31., 2018.5.23., 2019.4.18., 2020.5.19.)

제6조(계약에 의한 학과설치) ① 본 대학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 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장 직 제

제7조(조직) 본 대학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행정을 위한 본부조직과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2.11, 2014.8.11)

제8조(산학협력단의 설치) ① 본 대학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1(도서관 설치·운영) ① 본 대학에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도서관을 둔다.(신설 2016.1.22)

②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1.22)

1.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서 및 전문직원 배치기준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직원) ① 본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6.22., 2019.6.27.)

②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비전임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27.)

③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사무원을 둔다.(항변경 2019.6.27.)

제10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산학협력을 수행하되,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전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업무를 담당한다.

④ 사무원은 교육연구 보조와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개정 2017.2.16)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11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4년으로 한다.(개정 2012.9.18)

② 각 학과의 수업연한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8.1.14, 2012.9.18, 2016.7.8)

③ (삭제 2015.12.3)

④ 본 대학에 등록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이 평균평점이 4.0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의 1/4범위까지 단축하여 조기 졸업할 수 있다.(조항변경 2015.12.3)

제12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3조(학년도)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2008. 6. 18)

제1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②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매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이라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8.6.18, 2009.8.17)

제5장 입 학

제18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단, 신입학의 경우 매학년도 관할청이 정한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3, 2017.2.16)

제19조(입학자격) ① 신입생으로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 1학년 이상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신설 2017.2.16)

제20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1조(입학전형) ① 신입학전형은 매학년도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7.2.16)

② (삭제 2017.2.16)

제21조의2(성인학습자전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성인학습자 재교육 및 평생학습 체제를 위한 전형을 따로 두어 모집할 수 있다.(신설 2014.1.6.)

제21조의3(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15.4.14)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4.14)

제22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시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 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1.14)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14)

제24조(입학허가 및 등록) ① 입학은 입학사정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0.12.30., 2017.10.31)

② 입학 예정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30)

제25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요건 해당자

제26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총장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편입학) ① 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편입학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8.8.28.)

제28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자퇴 또는 제적당시의 학과로 재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자퇴 또는 제적당시의 학과가 통폐합되었을 경우에는 통폐합된 학과에,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개정 2017.2.16)

③ 재입학자의 학년 및 학기는 자퇴 또는 당시의 학년 및 학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입학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인정한다.(신설 2017.2.16)

제6장 전공배정, 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9조(전공배정) ① 전공배정은 1학년 1학기말 이후에 소속 계열의 배정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② 전공배정의 신청, 기준, 인원 등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부터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1.31)

② 전과의 과별 전입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단, 폐지된 학과의 전입인원은 제외한다.(개정 2017.2.16)

③ 전과의 과별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개정 2017.2.16)

④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과한 자는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과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6.10.25.)

② 휴학기간은 1년 단위로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2.16)

③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

1. 군휴학 :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 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2.16)

⑤ 휴학생은 학기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⑥ 창업을 이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4.14.)

제32조(복학) ① 제31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8.11)

③ 일반휴학중 군 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복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선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4.8.11)
 2. (삭제 2017.2.16)
 3.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자
-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장 교과 및 수업

제3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및 교직교과로 구분하며,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교과는 10%~20%, 전공교과는 80%~90%(교직교과 포함)로 한다.(개정 2015.12.3)

- ② 각 학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산학협동의 활성화 및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현장연수(인턴십)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30.)
- ④ 성인학습자 전형을 위한 별도의 평생학습중심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1.6.)
- ⑤ 각 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에 기반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2.16.)
- ⑥ 대학은 학생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8.1.31)

제35조의2(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①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이 개발되어 있는 분야의 교육과정은 NCS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를 반영하여야 하며, NCS의 개발이 유보되거나 미개발된 분야의 교육과정은 자체 직무능력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 ②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2.16.]

제36조(연계교육과정 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인정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연계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의1(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대학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12.30)

제36조의2(외국대학 어학연수) 우리대학과 교육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이나 사전에 승인을 받은

외국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12.30)

제37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이론,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실기의 교과목의 경우 학과의 필요에 따라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2.16)

② 학생은 매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4.15.)

제38조(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편입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2,3년제 학과는 교양교과 12학점, 전체 40학점이내에서, 4년제 학과는 전체 40학점 이내에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개정 2008.6.18., 2021.4.15.)

③ 재학중 2학점의 범위내에서 봉사활동을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경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 범위내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정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9.1.16, 개정 2014.4.14)

⑤ 해외연수 및 현장학습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학기당 24학점의 범위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교직과목 학점은 예외로 한다.(신설 2009.1.16, 개정 2009.8.17, 2013.6.7)

⑥ 병역법 제73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군복무중에 원격강좌 수강으로 취득한 학점과 군복무경험 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범위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1.16, 개정 2014.4.14, 2019.9.6.)

⑦ 병역법에 의거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9.1.16)

⑧ (삭제2014.4.14)

⑨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평생학습활성화지원사업 관련학과의 입학자는 본 대학교 입학전에 선행학습(평생학습학위연계강좌, 산업체근무경력, 학습경험 등)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학점 중 최대 1/4이내에서 특정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1.6, 개정 2014.4.14)

⑩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8.1.14, 조항변경 2009.1.16, 개정 2014.4.14)

⑪ 창업대체학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4.14)

제39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 자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전일제수업, 방송·통신수업(원격 수업), 온·오프 혼합수업(브랜드드, 플립러닝 등),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30, 2017.2.16)

② 매학기 개설교과목은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단,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경우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매학기 개설교과목은 당해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2.16., 2021.4.15.)

③ 수업시간표는 수강신청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개정 2017.2.16)

④ 강좌는 08:00부터 23:05까지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5.1.21.)

⑤ 학사운영상 소속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2.16.)

⑥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 위기경보 발령시 학사관리 및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10.22.)

제40조의2(원격수업) ① 본 대학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학생이 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원격수업을 수강할 경우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강의를 받은 것으로 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 수강에 의한 학점인정은 본 대학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는 원격 수업을 수강할 경우 졸업학점의 70%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4.15.)

④ 타대학이나 국가기관 등이 본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점교류협약 등을 맺을 경우 본 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7.2.16)

제41조(계절수업)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의 학점 취득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경우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17.2.16)

③ 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집중수업)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30)

제44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45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질병검사, 예비군교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2.16)

② 재학중 최종학기에 조기취업한 경우 취업기관의 근무실적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2.16)

③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변경 2017.2.16)

제46조(타교생의 수학) 국내·외의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본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대학과의 학술 교류협정 등에 의한다.

제8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7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중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④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간 및 기말평가를 대신한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총괄평가 등에 의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2.16)

제48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 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31)

등급	배점	평점
A+	95 - 100	4.5
Ao	90 - 94	4.0
B+	85 - 89	3.5
Bo	80 - 84	3.0
C+	75 - 79	2.5
Co	70 - 74	2.0
D+	65 - 69	1.5
Do	60 - 64	1.0
F	59이하	0
P		불계

② 교과목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④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⑤ (삭제 2012.9.18)

제50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
2.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제51조(학사경고)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졸업) ① 총장이 정하는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취득학점은 2년제는 74학점 이상, 3년제는 114학점 이상, 4년제는 135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9.18, 2019.9.6., 2020.10.22.)

③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는 2년제는 8학점 이상, 3년제는 12학점 이상, 4년제는 25학점 이상, 전공교과의 필수는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9.18, 2014.8.11)

제53조(후기졸업)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졸업학점 미달자
2. 전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제54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1호’, ‘별지1-2호서식’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2.9.18, 2013.6.7., 2014.8.11., 2016.7.8., 2017.4.6., 2018.5.23., 2020.5.19.)

② 1997년 이전 졸업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 학위증을 신청하면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4조1(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수여) 학칙 제36조의1 에 의하여 외국대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약정에 의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협정대학교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12.30, 개정 2017.2.16)

제55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9.18., 2019.9.6., 2020.10.22., 2021.4.15.)

학제	1년 수료	2년 수료	3년 수료	4년 수료
2년제	37학점	74학점	-	-
3년제	38학점	76학점	114학점	-
4년제	34학점	68학점	102학점	135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2년)	30학점	60학점	-	-

제9장 평생교육

제56조(학점은행제) ① 본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중 본 대학에서 2년제 48학점(3년제 65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5.19.)

② 그 밖에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본 대학의 '학점은행제등록생 운영규정'에 준하며, 그 외 관리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5.19.)

제57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8조(특별과정) ① 본 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1년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및 동시행령 제58조의2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별표 1-1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8.1.14, 개정2008.6.18, 2012.6.22., 2015.12.3., 2018.8.28.)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총장이 정하는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08.1.14, 개정 2012.6.22., 2015.12.3., 2018.8.28.)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8.1.14)

제60조(시간제등록과정) ① 본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은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2.5.1)

③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로 한다.(개정 2012.5.1)

④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로 한다.(개정 2012.5.1)

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은 출신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의 성적 등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2.5.1)

⑥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1)

⑦ 시간제등록생의 최대 신청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12.5.1)

⑧ 기타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5.1)

제10장 학생활동

제61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의 전통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 기구인 수성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2.5.1)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 및 복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개정 2008.1.14)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2조(학생단체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사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단체행위, 시위, 성토,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4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65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생활과 학생자치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학생상벌, 학생복지 및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심의한다.

제66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기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장애학생의 지원)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의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신설 2011.3.30, 개정 2012.6.22)

제67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규율 및 상벌

제68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9조(포상) 총장은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 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3.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방해한 자
4. 본 대학 관련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5.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상벌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2조(성희롱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치를 신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납입금

제73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총장이 정하는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및 기타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6.18)

제74조(납입금의 감면)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5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6조(납입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5.4.14)

제13장 교수회 및 제 위원회

제77조(교수회)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2.6.22)

제78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총장이 되며, 의장 부재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7.9, 2017.2.16)

1.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대학평의위원회의 교원대표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9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본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7.9)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9조의2(대학평의위원회) ① 본 대학의 중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7.9)

제79조의3(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0.12.30)

제79조의4(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법인 추천인사 포함), 학생, 관련전문가(해당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학부모 또는 동문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12.30, 개정 2011.11.29)

1. 교직원 4명
2. 학생 3명
3. 관련전문가 2명

4. 동문 또는 학부모 1명

②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중 어느 한단위에 속하는 위원회의 수가 위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부모 또는 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0.12.30)

제79조의5(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신설 2010.12.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0.12.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신설 2010.12.30)

제79조의6(운영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12.30)

제80조 (삭제 2007.7.9)

제81조 (삭제 2007.7.9)

제82조(제위원회) ① 총장은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학교기업

제83조(학교기업의 설치)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제84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총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교육은 30시간을 이수한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5조(학교기업에서의 보상금 지급)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발생시 순이익의 40% 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교직원의 연 보수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학칙 제·개정절차

제86조(학칙 제·개정) ① 이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1.2.11)

1. 학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부서장은 개정안을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학지원처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7일 이상 교내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3. 각 부서장은 예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제출기한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

다.

4. 총장은 학칙 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포한다.

② (삭제 2012.6.22)

제87조 (삭제 2011.2.11)

제88조 (삭제 2011.2.11)

제89조 (삭제 2011.2.11)

제90조 (삭제 2011.2.11)

제91조 (삭제 2011.2.11)

제16장 평 가

제92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8.17, 조항변경 2011.2.11, 2014.8.11)

제17장 보 칙

제93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조항변경 2009.8.17, 2011.2.11., 2014.8.11, 2017.2.16)

제94조(조기취업자 학점인정에 대한 특례규정) 졸업학기에 조기취업한 재학생의 출석과 학점인정은 제44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않고,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특례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6.10.25)

부 칙(제정 : 1979.2.28)

1. (시행일) 본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간호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3.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0.2.2)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1.8.3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시행당시 양호과의 재적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간호과의 재적학생으로 본다.

부 칙(1982.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1.2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3항 및 제24조제5항은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4학년도 말까지 폐지하는 소속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988학년도까지로 한다.

부 칙(1984.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87.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 자격고사 합격자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본과 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학 과	졸업정원	적용년도	
		부 터	까 지
식품영양과	120	1986	1989
유아교육과	240	1987	1990
경 영 과	160	1986	1988
	120	-	1989
일 어 과	120	1986	1988
	80	1989	1991
세무회계과	120	1986	1988
	80	1989	1991
부 동 산 과	80	1988	1991
간 호 과	120	1987	1990

부 칙(1987.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 중 간호과의 학생이 1989학년도까지 그 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학과가 신설·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소속으로 할 수 있다.

부 칙(1989.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7.3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 제24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3.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4.26)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제17조제3항에 의거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1993.8.5)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2.2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7.3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3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변경에 관한 사항) 이 학칙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1997.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전문학위 수여에 관한 제31조(졸업 및 수료) ①항, ②항은 1997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5.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2.1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5.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산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구산업정보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2.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계열 및 학과 명칭에 관한 사항) 학과명칭 변경 또는 학과통합 및 계열부의 신설로 인하여 종전의 학과에 재적중인 자가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명칭 변경된 학과 및 학과통합에 따른 계열부 소속으로 본다.

부 칙(1999.9.4)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부 칙(2002.3.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2003.3.1)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3.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변경) 학과가 신설·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 소속으로 할 수 있다.

부 칙(2004.1.19)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3)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3)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8.24)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2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수업연한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3년제 과정이 2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3년제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 종전의 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다만,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학생은 3년제 과정을 적용한다.
3.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4.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모집단위 소속 재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후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부 칙 (2007.7.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4)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수업연한 경과조치) 학칙 제5조 별표1 및 제11조 제2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시행 이전에 폐지된 학과(산림생명자원과, 산업안전보

건과, 환경관리시스템과, 디지털사진영상과, 캐릭터디자인과, 국제관광계열 관광중국어전공, 뷰티케어과)의 소속으로서 복학하는 자는 복학시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에 따른 제반사항은 학칙 제30조(전과)를 따른다.

② 이 학칙시행 당시의 뷰티케어과 소속 재학생중 2008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8학년도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뷰티스타일리스트과나 피부건강관리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③ 이 학칙시행 당시의 마케팅경영과 주간 소속 재학생중 2009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9학년도 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 학과 야간 또는 타학과로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에 따른 제반사항은 학칙 제30조(전과)를 따른다.

부 칙(2008.6.1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1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계열/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시행 당시 컴퓨터정보계열 컴퓨터정보전공(주/야), 모바일컴퓨터전공(주), 모바일인터넷전공(주)에 재적 학생중 2009학년도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계열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0학년도부터는 학과명칭이 변경된 컴퓨터정보과 소속 학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시행 당시 마케팅경영과 재학생중 2009학년도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0학년도부터는 학과명칭이 변경된 산업복지경영과 소속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2009.1.16)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학교장 명칭변경)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2009.1.30, 법률제9356호)으로 본 학칙 중 학교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2009.4.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1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3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의 별표1”, “제54조의 별표2”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계열/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시행 당시 호텔조리계열, 식품영양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9학년도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계열,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0학년도부터는 통합된 계열명칭인 호텔외식조리계열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시행 당시 산업복지경영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9학년도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0학년도부터는 학과명칭이 변경된 보건복지경영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시행 당시 생활체육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9학년도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0학년도부터는 학과명칭이 변경된 생활체육레저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④ 이 학칙시행 당시 아동음악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9학년도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0학년도부터는 학과명칭이 변경된 아동음악보육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⑤ 이 학칙시행 당시 아동미술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9학년도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0학년도부터는 학과명칭이 변경된 아동미술보육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10.7.12)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2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의 별표1”,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3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3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의 별표1”, “제54조의 별표2”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계열/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당시 호텔조리계열, 호텔외식조리계열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1학년도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2학년도부터는 학과명칭이 변경된 호텔조리계열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11.11.2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산업정보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수성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6.22)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1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제49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는 201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2.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경과조치) ① 종전 3년제 간호과 재적생에 대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4년제 간호학과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3년제 간호과 휴학생이 2015학년도 이후에 복학할 경우 4년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3. (계열/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당시 멀티미디어과 재적생중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3학년도부터는 학과명칭이 변경된 방송영상미디어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13.6.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의 별표1”, “제54조의 별표2”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부사관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당시 부사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13학년도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4학년도부터는 학과명칭이 변경된 군사학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3. (호텔관광계열 관광일본어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당시 관광일본어전공에 재

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4학년도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5학년도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4. (호텔조리계열 푸드스타일링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당시 푸드스타일링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13학년도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4학년도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2014.1.6)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14)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8조 제9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운영 경과조치) 3년제 간호과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4년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4.8.1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의 별표1”과 “제54조의 별표2”중 치기공과의 학위명칭을 제외하고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계열/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한 방송영상미디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전자정보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1.)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한 호텔조리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호텔조리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1.)
③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한 호텔관광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호텔관광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1.)

부 칙(2015.1.2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4)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계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5.3.1.자로 계열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계열 및 계열 부장” 명칭을 삭제한다.

부 칙(2015.12.3)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의 별표1”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당시 의료관광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16학년도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7학년도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에 따른 제반사항은 학칙 제30조(전과)를 따른다.

부 칙(2016.1.22)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의<별표1>”, “제54조의<별표2>”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당시 보석감정과, 아동음악보육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17학년도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8학년도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에 따른 제반사항은 학칙 제30조(전과)를 따른다.(개정 2018.1.31)

부 칙(2016.10.25)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부칙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4조는 201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7.2.16)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78조제3항제1호가 개정됨에 따라 교수회 운영규정 제3조제2호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학칙 제93조가 개정됨에 따라 교무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학칙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4.6)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의<별표1>”, “제54조의<별표2>”는 2018학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2.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컴퓨터기계설계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드론기계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법률실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회계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호텔관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호텔항공관광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레저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스포츠레저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0.3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행한 입학허가는 본 학칙 제24조 제1항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3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의 <별표1>”은 2018학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2.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전자정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18학년도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9학년도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에 따른 제반사항은 학칙 제30조(전과)를 따른다.

부 칙(2018.5.23)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의 <별표1>, 제54조의 <별표2>”는 2019학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2. (학과 전공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호텔항공관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항공서비스전공, 호텔관광전공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8.8.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9조의2<별표1-1>”은

2019학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1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의<별표1>”은 2020학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컴퓨터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IT융합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아동미술보육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미술심리보육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19.6.2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강사의 적용례) 이 학칙 제9조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9.6.)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학점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제52조(졸업), 제55조(수료)에 관한 사항의 간호학과는 2022년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5.19.)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5조의 <별표1>”, “제54조의 <별표2>”는 2021학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IT융합과, 법률회계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21학년도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22학년도 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에 따른 제반사항은 학칙 제30조(전과)를 따른다.

부 칙(2020.10.2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제52조(졸업), 제55조(수료)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당해 학년도의 동일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 및 수료한다.
③ 졸업 유급생이 복학 및 재입학으로 개정된 졸업학점에 따라 졸업이 가능한 경우라도 1학기

이상 최소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21.4.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개정 2014.8.11)

제 호

학 위 증 서
()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성대학교총장 (인)

학위번호 : 수성대-0000-0000

[별지 1-1호 서식](신설 2012. 6.22, 개정 2014.8.11.)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학과(전공) :

학 위 :

위 사람은 우리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성대학교 총장

학위번호 : 수성대-0000(학)-0000

[별지 1-2호 서식](신설 2012.9.18, 개정 2014.8.11)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학과(전공) :

학 위 :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성대학교 총장

학위번호 : 수성대-0000(학)-0000

[별지 2호 서식]

제 호

수료증서
()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학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성대학교총장 (인)

[별지 3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학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및 학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수성대학교총장(인)

학위번호 : 수성대-학점-0000-0000호

<별표 1>(개정 2008.9.11, 2009.9.30, 2010.9.27, 2011.9.29, 2012.6.22, 2012.9.18, 2013.6.7, 2014.8.11, 2015.7.21., 2015.12.3., 2016.7.8., 2017.4.6., 2018.1.31., 2018.5.23., 2019.4.18., 2020.5.19.)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대계열	설치학과명	수업연한	입학정원		합계
			주간	야간	
공학	드론기계과	2년	30	-	30
	ABC과	2년	30	-	30
	VR콘텐츠과	2년	30	-	30
자연과학	간호대학 간호학과	4년	124	-	124
	방사선과	3년	40	-	40
	보건행정과	2년	30	-	30
	뷰티스타일리스트과	2년	45	-	45
	안경광학과	3년	40	-	40
	애완동물관리과	2년	60	-	60
	재활과	2년	35	-	35
	제과제빵커피과	2년	40	-	40
	치기공과	3년	40	-	40
	치위생과	3년	36	-	36
	피부건강관리과	2년	40	20	60
	호텔조리과	2년	70	-	70
인문사회	경찰행정과	2년	60	-	60
	군사학과	2년	40	-	40
	보건복지경영과	2년	70	30	100
	사회복지과	2년	80	40	120
	유아교육과	3년	70	30	100
	호텔항공관광과	2년	50	-	50
예체능	미술심리보육과	2년	30	-	30
	스포츠레저과	2년	80	20	100
	웹툰스토리과	2년	30	-	30
24개 학과			1,200	140	1,340

<별표1-1>(삭제 2015.12.3., 신설 2018.8.28.)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입학정원, 학위종별

학과명	입학정원	학사학위명	비고
호텔외식관광학과	20명	호텔외식관광학사	2년과정(주간)
합 계	20명		

<별표 2>(개정 2008.1.14, 2008.9.11, 2009.1.16, 2009.9.30, 2011.9.29, 2012.6.22, 2012.9.18, 2013.6.7., 2014.8.11., 2016.7.8., 2017.4.6., 2018.5.23., 2019.4.18., 2020.5.19.)

학과별 학위명칭

대계열	학과명	학 위 수 여 명 칭	비고
공학	전자정보과	전자정보전문학사	
	드론기계과	기계기술전문학사	
	ABC과	ICT전문학사	
	IT융합과	공업전문학사	
	VR콘텐츠과	정보기술전문학사	
자연과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간호과	간호전문학사	
	방사선과	보건전문학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전문학사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미용전문학사	
	안경광학과	안경광학전문학사	
	애완동물관리과	애완동물전문학사	
	재활과	보건전문학사	
	제과제빵커피과	조리과학전문학사	
	치기공과	치과기공전문학사	
	치위생과	치위생전문학사	
	피부건강관리과	피부미용전문학사	
	호텔조리과	조리전문학사	
	인문사회	경찰행정과	행정전문학사
군사학과		군사전문학사	
법률회계과		법률회계전문학사	
보건복지경영과		보건복지경영전문학사	
보석감정과		보석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문학사	
호텔항공관광과		관광전문학사	
예·체능	미술심리보육과	미술전문학사	
	스포츠레저과	체육전문학사	
	아동음악보육과	음악전문학사	
	웹툰스토리과	문화콘텐츠전문학사	